

I. 정정보도청구사례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수원지방법원 1993. 4. 20.자 판결(92가합9602)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93년 4월 20일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경인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경인일보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대양개발이 공원내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관할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양개발이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련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기사로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인일보 1992. 3. 31자 1면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대양개발이 사유지내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양공원내에 철조망 및 방화선을 설치하면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 산림을 훼손하였고, 관할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인 대양개발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92경기중재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추후에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는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기사이므로 현시점에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9602 정정보도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양개발(大洋開發)

인천 서구 가좌동 148의 2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하 민 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 영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성 근

변론종결 : 1993. 3. 2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인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별지(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인일보 제1면 우측 상단에 10단 크기로 별지 제(2) 기재의 정정보도내용을 게재하라.

이 유 : 1. 피신청인 발행의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의 기사란 중 상단 부분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하에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1991. 10.경부터 인천 북구 계산동 산29의 2 일대 45만여평의 사유지내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조망 및 방화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등 계양산의 산림을 크게 훼손하였고, 산림훼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양개발 사유지 45만여평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철조망 안쪽으로 10~15미터, 밖으로 5~8미터 범위 안의 오리나무, 소나무 등과 잡목들이 잘려 있었으며, 대양개발측이 베어낸 나무들 가운데에는 10~15년생 소나무, 오리나무가 상당수에 달했고 철조망 주변에 잘려진 나무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으며, 대양개발측은 철조망을 본격적으로 설치한 1992. 1.말경 관할 북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7단 크기의 기사가 3단 13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신청인은 위 기사가 허위보도이므로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경인일보에 위 기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내용이 오히려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의 6 내지 32, 35, 소갑제4호증의 4, 6, 9 내지 15, 17, 소갑제5호증의 9 내지 153, 소갑제7호증, 소갑제8호증, 소갑제9호증의 1 내지 8, 소갑제10, 18, 20, 22호증의 각 1, 2, 소갑제11호증의 1 내지 5, 소갑제 12, 13, 14, 19호증의 각 1 내지 4, 소갑제15호증, 소갑제16, 21호증의 각 1, 2, 3, 소갑제 17호증, 소갑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 , 장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장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인천시가 지정 고시한 같은 시 서, 북구 일원에 위치한 계양공원 면적 5,308,869평방미터내 임야 38필지 1,509,74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는 1991. 3. 4. 위 공원용지에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입지 심의와 시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1991. 7. 16.에 건설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가 건설부 장관의 보완지시에 따라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던 중 사업승인권이 1992. 1. 1.자로 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도시공원법 소정의 입안 및 결정 고시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사실, (2) 위 공원용지내의 산림이 인근 사업자들의 불법 형질변경, 토사채취, 오물투기, 임목의 도벌, 산불 등의 영향으로 훼손되자, 신청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1. 10. 5.경부터 1992. 1. 27.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공촌동 162의 1, 4, 164의 1, 북구 계산동 52의 8, 9, 10에 걸쳐 있는 계양산내 소유임야 중 32,000평방미터에서 무육간벌을 한다는 이유로 닝쿨류, 고사목과 불탄 나무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간벌 등 직경 10센티미터 이하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의 임목을 벌채하였고, 1992. 1. 28. 이를 관할구청인 서구청과 북구청에 신고한 사실, (3) 신청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계양산내 소유임야 중 217,771평방미터에서 경계를 표시하여 임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이 1.8미터에서 2.1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3.98킬로미터에 걸쳐 시설하여 공원시설인 율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2. 14.경 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북구청으로부터 각 사업중지 지시를 받고 같은 해 2. 19.경 공원점용허가신청을 한 채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철조망 설치작업을 계속한 사실, (4) 신청인은 1992. 3.경 무육간벌한 곳에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한 사실, (5) 그후 피신청인은 소외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로부터의 제보에 따라 위 작업 현장에서 불에 타 죽은 작은 소나무를 확대 촬영하여 위 인정과 같

은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보도내용 중 「신청인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어 산림을 훼손하였고, 베어낸 나무 가운데에는 10 내지 15년생 소나무, 오리나무가 상당수에 달했으며, 신청인의 사유지 45만여평의 경계 전체에 걸쳐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보도내용 중 앞서 인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기사로서,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위 기사의 공표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한 신청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경인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의 크기로(신청인은 제1면 우측 상단에 10단의 크기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정정보도문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는 적절하지 않고,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그 문안의 활자 크기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20.

재판장 판사 이 우 근
판사 문 현 돈
판사 박 동 우

정정보도문 (1)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1992. 1.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시공원지역인 계양산내 소유임야에서 경계를 표시하여 임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3.98킬로미터에 걸쳐 시설하여 공원시설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같은 해 2.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중지 지시를 받자 뒤늦게 공원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1. 10.경부터 1992. 1.경 사이에 신고없이 소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를 벌채한 바는 있으나, 당국의 수사결과,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본지의 보도기사

및 사진과 같이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이 아니고, 너쿨류, 고사목과 불탄 나무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간벌 등 직경 10센티미터 이하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의 입목을 무육간벌한 것으로서 1992년 1. 말경 당국에 사후신고하였으며, 3월에는 무육간벌한 곳에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보도내용(2)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지는 위 기사에서 「주식회사 대양개발(대표이사)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등 계양산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자칭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의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가서 불에 타 죽은 작은 소나무를 확대 촬영하여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기사를 냈으나, 사실을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 대양개발은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이 아니고, 관계구청에 구두신고와 공문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으며, 산림법, 공원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합당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무육간벌을 한 것이고, 1992년 3월에는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하여 산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다른 신문의 기사를 검증도 없이 인용하여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 7. 30.자 판결(93카합312)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993년 7월 30일 국회의

원인 오 의원이 우리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인 우리신문사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간 우리신문은 1993년 3월 29일자에 신청인인 오 의원이 재산공개시 재산평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연고지가 없는 제주, 전남 등지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한 K일간지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의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정확한 계산이고 무연고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의 취득경위, 자금출처를 설명하면서 정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야를 투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주간 우리신문에 『오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경기중재8).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312 정정보도

신 청 인 : 오 ()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의 436

대표이사 강 희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현 식

변론종결 : 1993. 7.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피신청인 발행의 주간 우리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2단 기사의 형태로 인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우리신문 1면 머릿기사에 8단 제목을 사용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의 신문보도

피신청인이 그 발행의 주간 우리신문 1993. 3. 29.자 제1면 머릿기사에 『오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란 제목하에 『무연고 제주, 전남 등에 임야 2만8천여평 보유, 재산평가 10분의 1로 축소 신고도』라는 등의 소제목 붙여, 「오 의원(60·국회문공위원장, 민자당 중원분당지구당 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개한 재산평가액이 최고 10분의 1까지 축소되거나 연고지가 없는 제주, 전남 등지에 부인 명의의 임야 2만8천여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철저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K일간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부인 명의로 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임야 4필지, 전 1필지 등 5필지 1만3천4백97m²(4천90평)는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90~1백만원으로 4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4억2천7백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0분의 1로 축소. 오 의원의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분당구 대장동 임야 1필지 6천57m²(1천8백35평)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1억6천5백만원인데, 이를 2천3백7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민자당 중앙당에는 이 임야가 가족묘지인 문중산으로 8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면에 임야 1만2천1백32m²(3천6백76평),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에 임야 8만2백50m²(2만4천3백18평)등 9만2천3백82m²(2만7천9백94평)를 부인 명의로 취득했는데 제주도의 임야는 국회의원 재임중에, 전남 장흥군의 임야는 서해안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보도의 부분

소갑2, 4, 7호증의 각 1 내지 4, 소갑3호증, 소갑5호증의 1 내지 5, 소갑6호증의 1 내지 3, 소갑8, 12, 14, 15호증, 소갑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소갑11호증의 1, 2, 소갑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권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 신청인은 그 소속 당으로 부터 재산공개에 관한 지침으로 소유부동산을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평

가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실, 신청인의 처 궤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전 1,554m², 같은 동 530의 1. 전 456m², 같은 동 530의 2. 전 4,056m² 및 같은 동 530의 3. 전 7,431m², 지적 합계 13,497m²(약 4,090평)를 소유하고 있는데, 1992. 1. 1. 기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이들 토지의 가격은 위 528.이 36,052,800원(1,554×23,200), 위 530의 1.이 15,139,000원(456×33,200), 위 530의 2.가 129,386,400원(4,056×31,900), 위 530의 3.이 246,709,200원(7,431×33,200)이어서 그 합계가 427,287,600원인 사실, 신청인은 이들 토지의 가액을 위 인정의 금액으로 각 신고 공개하였는데, 위 공시지가는 1993. 1. 1. m²당 위 528은 13,300원, 위 530의 1. 3은 각 금18,400원, 위 530의 2는 16,300원으로 각 하향 조정되어 평균 16,600원(평당 약54,780원)으로 하락한 사실, 한편 이들 토지의 실질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위 528.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526. 전 883m²와 같은 동 529 전 1,412m²가 1992. 5. 1. 한국도로공사에 m²당 40,500원(평당 133,650원)에 매수되었고, 역시 이에 인접한 같은 동 53의 1 전 570m²도 1993. 4.경 당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평당 금 145,000원에 경락되는 등으로 평당 140,000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신문사의 기자들이 현지 주민과 부동산소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여도 그 가격이 평당 10만여 원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30 내지 60만원정도 된다는 진술을 많이 받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경향신문에서 그 가액을 평당 80 내지 100만원으로 보도하였고 성남 시내에 있는 중개인사무소로부터 평당 100만원 상당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 (2) 신청인의 처 궤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 2915. 임야 12,132m²와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임야 86,250m²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궤는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하여 독립된 수입을 얻고 있는데, 1979년경 이웃에 사는 신청외 임마에게 자신이 저축한 3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남제주군에 있는 위 임야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므로 부득이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고, 위 궤는 1980년경 신청인과 의논없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린빌딩을 그 경영의 병원자리로 구입하였다가 성남시에서 계속 거주하자는 신청인의 요구로 위 빌딩을 매각하였는데, 위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소개업자가 노후생활 대책을 위해 사놓으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위 대금을 가지고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장흥군에 있는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 신청인으로서 위 궤의 위와 같은 임야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관계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알아보지도 않고서 단지 이들 임야가 위 궤의 소유명의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신청인이 처

명의로 위와 같은 임야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에 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그 밖의 주장

(1) 신청인은 운중동에 있는 위 임야 등은 그의 처가 위토로 구입한 것이고, 신청인의 명의로 있는 대장동 산 임야는 그의 형이 조상들의 산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신청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으로서 가족들 공동 소유의 문중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은 모두 이들 토지의 취득경위, 용도, 매수자, 매수자금 등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이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취급되지 아니한 사항이고, 나아가 위 청구부분을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게재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신청인이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위 보도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는 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또 대장동에 있는 위 임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지분은 등기명의로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8분의 1밖에 안되므로 민자당당직자 재산공개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그 가액의 8분의 1 가격을 신고한 것은 축소신고가 아니며 신청인이 고의로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위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갑3호중, 소갑4, 6호중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장동 산 임야 6천57㎡(1천8백35평)는 공부상 신청인과 그의 형인 신청외 오 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1992. 1. 1.자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그 가격이 182,315,700원인데, 신청인은 당 당직자 재산공개시 위 임야가 가족묘지로서 8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가격을 2천3백7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는 바, 이 사건 기사 중 위 임야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나 설명의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신청인의 정정요구와 거의 차이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축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의 항변

피신청인은 운중동에 있는 위 토지가격의 축소신고에 관한 기사를 1993. 3. 25.자 경향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신문에 게재한 이상 그 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은 피신청인의 그것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정정보도문의 규격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제1면 머릿기사로 8단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라고만 청구하고 있고 그 밖의 규격에 관한 주장은 없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고,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또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 같은 제1목록 기재 부분으로 제한하고 그 말미의 명의인은 정정보도 신청인으로 표시하며, 위 정정보도문은 현재 가로쓰기로 조판하고 있는 주간 우리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제목『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2단 기사의 형태로 인쇄하여 게재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우리신문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정정보도문을 위 인정의 규격으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30.

재판장 판사 김 정 술
판사 한 양 석
판사 박 순 관

정정보도문

1993. 3. 29.자 본지 제1면에 『오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라는 제목과 『재산평가, 10분의 1로 축소신고도』라는 소제목 아래 신청인이 지난 3. 20.자 당 당직자 재산공개 시 처 명의로 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임야 등 토지 1만3천4백97m²(4천90평)를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90 내지 1백만원으로 40억원대에 이르고 있음에도 4억2천7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무려 10분의 1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에 임야 합계 9만2천82m²(2만7천9백94평)를 처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처 명의의 위 운중동 토지의 가격을 당의 방침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로 신고하였고, 그 실지 거래가격도 평당 14만여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토지의 가격을 10분의 1로 축소신고 했다는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처 명의의 남제주군과 장흥군에 있는 위 임야는 모두 처가 의사생활을 하여 얻은 자신의 소득으로 신청인과 상의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임야를 처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는 위 기사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오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3. 3. 29.자 우리신문 1면 『오 의원 땅 투기 의혹』 제하의 8단 기사에서 오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시 당 중앙당의 재산공개지침에 의거 자신과 가족소유의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공개함으로써 이를 축소하여 공개하거나, 오 의원이 자신이나 그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이 재산공개시 시가 40억원 상당의 성남시 운중동 소재의 땅을 10분의 1로, 성남시 대장동 임야 가족묘지를 8분의 1로 각 축소 신고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전남과 제주도에 오 의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 국회의원 6선과 정무장관직을 역임한 오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 의원 부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임야는 위토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시가는 평당 90만~1백만원이 아니라, 평당 금 130,000원이고, 공시지가는 금 100,000원으로 신고금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 4억2천7백만원임이 밝혀졌으므로 무려 10분의 1로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오 의원 명의의 위 같은 구 대장동 산
임야는 오 의원의 3대 선조의 묘소가 있는 선산으로서, 오 의원의 형이 구입하여 오
의원과 형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가족들 공동소유의 문중산으로 축소신고
한 것이 아니며, 남제주군 성산면 임야는 오 의원 부인이 1979년도에 금 300만원을 남에게
빌려 주었는데 차용인이 위 돈 대신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오 의원 부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며, 전남 장흥군 유치면 임야는 오 의원 부인이 20여년간 의사생활들을 하면서 신청인
모르게 사둔 임야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신문사 발행인 이 형 하

□

.....

학생의 전학이유가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자 판결(93카합79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동섭 부장판사)는 1993년 9월 6일 서
울 신림국민학교가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 학교는 문
제의 사실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
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정정보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 1993년 4월 25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학교 돈봉투』란
제목으로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
울 S국민학교 2학년생인 김 군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
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인 신림국민학교는 김

의 전학이유는 돈봉투 때문이 아니라 종교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93서울중재8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보도는 김 군의 어머니로부터 인터뷰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792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서울신림국민학교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8의 1

대표자 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8. 2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21 : 00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 데스크」의 끝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8, 소갑 제4호증, 기록에 첨부된 언론중재신청 사건 기록,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 남궁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보면,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의 713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418의 1에 있는 서울신림국민학교(이하 신청인 학교라 한다) 제1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신청외 김 이 1992.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2의 48에 있는 사립학교인 서울 삼육국민학교로 전학한 사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이 1993. 4. 25. 21 : 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학교 돈봉

투』란 제하에, 학부모와 교사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 현상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울 S국민학교 2학년 김 군의 어머니 신청외 오 가 김 군의 담임선생님이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아이를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돈봉투를 요구한 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에서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요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면서, 김 군이 이른 아침에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 전학간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급한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여러명의 여성과 함께 교실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 불특정인 상호간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모습 등의 영상을 곁들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학교는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담임선생 및 학생만이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 학교는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 학교와 위 보도 내용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내용에는 신청인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어 이로 인해 신청인 학교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신청인 학교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 중에는 「서울 S국교 2학년 김 군」,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라는 표현과 함께 김 군과 그 어머니의 얼굴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및 사진과 김 군이 신림국민학교에서 회기동 사립학교(삼육국민학교)로 전학간 사실과 관련지어 보면, 위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가 신청인 학교를 가리키고 있음을 신청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등 신청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내용과 신청인 학교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 내용의 요지는 김 군의 담임선생님이 김 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여, 부득이 그 어머니가 돈봉투가 없는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 학교 역

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와 대비되어 「돈 봉투를 받는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 학교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신청인은 1993. 7. 19. 신청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를 당초의 서울신림국민학교에서 신청인 학교 교장인 신청의 김 과 서울신림국민학교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표시의 동일성을 그르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의 김 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김 군의 담임선생이 그 어머니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거나 돈봉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김 군의 전학 이유는 김 군 부모의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전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그러나, 이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문상의 용어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 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

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갑제2호증의 2와 소을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궁 의 증언에 의하면, 김 군의 어머니 오 가 김 군의 담임선생에게 1992년 스승의 날등에 화분이나 양산을 선물하거나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에 쓰라며 금 50,000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담임선생으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거나, 오직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 내용중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라는 표현은 취재기자가 학부모로부터 전학의 동기 및 이유를 듣고, 이를 요약한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 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 바, 「담임선생님이 돈봉투를 요구하였다」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은 또, 이 사건 보도 가운데 신청외 오 의 인터뷰 내용 중 「춘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라는 것은 김부름 군의 어머니가 평소 친한 사

이인 그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서,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여서 「김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으므로,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외 오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김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통상 누구를 거쳐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김 군의 담임선생님은 옆반 선생님에게 그같은 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정정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1993. 6. 27. 밤 같은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미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였고, 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들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 받고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율제8호증의 기재 및 소율검제1호증(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학교와 담임선생 및 교육관련 당국의 항의, 정정요구와 함께 양측의 대립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란이 일자, 1993. 6. 27. 밤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내용은 진실이며, 이 사건 보도후 신청인 학교등이 김 군의 부모에게 담임선생의 구명을 위해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써 줄 것을 간청하여 김 군의 부모가 해명서를 써 주었는데, 신청인 학교등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 비난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도한 1993. 5. 5.자 한국교육신문(소갑제8호증) 제1면의 「MBC 방영 김 군의 전학 진짜 이유는 돈봉투 아닌 종교」 제하의 기사 일부를 사진으로 보도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에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의 중재신청을 냈다는 등의 사태의 전말과 신청외 오 의 주장 및 피신청인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만화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반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그나마도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없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위 재보도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993. 6. 27.의 방송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이 피신청인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6.

재판장 판사 박 동 섭

판사 곽 상 현

판사 양 경 승

제1목록(원 보도 내용)

정 (앵커) : 요즘 터져나오는 교육계 비리는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는 원초적으로 국민학교의 돈봉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67%가 돈봉투에 대한 부담감으로 담임교사를 만나기 꺼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돈봉투의 실상을 국민학교 학생인 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 봅니다. 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 (기자) : 돈봉투로 야기된 학교 교육의 굴절, 그 이지러진 모습을 우리는 9살난 국민학교 2학년 의 새벽 등교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아직 곤한 잠에 빠져 있을 새벽 6시 반은 이가 이미 지하철 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오르는 시각입니다. 버스에서 지하철, 그리고 다시 버스로 이어지는 의 새벽 장정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이 어머니가 내린 아픈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그러나, 자기의 키보다 높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도 왜 매일 4시간의 통학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가 서울 신림동의 동네 학교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간 것은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오 (김 군의 어머니) : 10월달 쯤 촌지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제 아이를 저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송 : 돈봉투를 일러 고지서라고 부르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돈봉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 학교 앞 서점은 월간지나 시집, 성경책 속에 돈봉투를 끼워 가려는 학부모들로 붐빕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돈봉투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산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울강동 N서점 주인 : 그렇죠 뭐, 사실대로 얘기해 드리는 게 낫지요.

송 : 어떻게 압니까?

서점주인 : 정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눈치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이거 넣어 드려요.

송 : 액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서점주인 : 최하가 5만원, 보통 10만원 합니다.

송 : 이런 돈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Y고교 강모 교사 : 책을 주시는데, 단행본을 주시면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월간지로 주시면 다달이 주시는 거고, 계간지를 주시면은 계절마다 한번씩 찾아 오시는 그런 얘기를 선배 교사들한테 들었거든요.

송 : 일부 학부모들은 심지어 담임 후원회까지 만들어 달마다 일정액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서점주인 : 임원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백만원 맞춰 준다는 게 예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반에, 그래 갖고 대충 백만원을 맞춰준대요. 그래 갖고 하면서도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 : 어머니와 선생님 사이에 돈봉투가 오간다는 것이 몰라야 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S고교 학생 :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선생님은요, 면담을 할 때 학생들을 면담을 하죠. 부모님들한테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고 학생 : 상담하러 오시면, 괜히 선생님은 책상을 청소를 막 하세요. 책 좀 본다고

서랍도 열었다 닫았다 막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사이에 막 봉투를 넣어 주신대요.

송 :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이 취업할 때가 되면, 학교에서 써 주는 추천서 때문에 적지 않은 액수의 돈봉투가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J여상 학생 : 저희 같은 경우는요, 취업하려면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사례비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취업 선생님 좋은 데 추천 좀 해 달라고 드리고 ...

송 : 돈봉투가 오가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학부모와 학생들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설 땅을 잃고 사도가 붕괴되어 간다는 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는 교사들 자신입니다. 돈봉투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담임 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H고 교사 : 교장이 「너는 담임을 안 준다」 그것은 너한테는 이익이 없다. 담임 맡음으로 인해서 얻은 물질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 안해 주겠다 이런 식이죠.

송 : 돈봉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 (경기대 교수) : 교장이 내 당대에서는 이걸 실천시켜야 한다, 특히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내 당대에 있으면서 이런 부정부패의 씨앗이 되고, 또 교육계를 망치는 일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윗분들에게 의지표명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 다행히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돈봉투 수수행위에 대해 파면등 중징계 방침을 일선 교육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박 (교육부 장학편수실장) : 극히 일부 선생님의 일이지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교직풍토를 혼탁하게 한다든가 선생님 스스로의 도덕적인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든 교직 사회에서 떠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 그러나 이러한 지시나 지침만으로 돈봉투 문제가 근절된다고 장담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 없이 새벽 등교길에 나섭니다. 이를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부패상을 보이고 있는 교육현실에서의 개혁...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MBC뉴스 송 :입니다.

제2목록(당원이 명하는 보도 내용)

제목 : 1993. 4. 25.자 본 방송 중『학교 돈봉투』제하의 보도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반론
본문 : 1993. 4. 25. 일요일 밤 본 뉴스 시간에 학내에서의 돈봉투 문제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내용 중에, 서울 신림동 S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던 김 군의 어머니 오 씨가 김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인터뷰와 함께, 김군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김 군을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보도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인 서울신림국민학교(교장 김)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당시 김 군의 담임교사는 김 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거나 돈봉투를 받은 일이 없다. 김군이 사립학교로 전학한 것은 김군 부모의 종교 교리상의 이유로, 토요일 수업이 없는 같은 종교 계열의 사립학교로 옮기기 위한 때문으로 안다.」 □

「현직 재단간사」를 「전 재단간사」로 단순 오보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 8.자 판결(93카기405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9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9월 8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간사인 이. 씨가 순복음신문의 발행인인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단순오보에 대한 정정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순복음신문은 1993년 4월 4일자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이사장과 교단의 재산 수호대책위원장이 마찰을 빚어오던 중 재단이사장이 재산수호대책위원장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끝머리에 「전 재단간사인 이. 목사도 불구속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 이 씨는 재단간사로 재임중이었음에도 전직으로 표기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현직 재단간사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재단간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내용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청인은 순복음 신문에 『과연 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 전 재단간사도 명예훼손혐의 기소돼』 제하의 위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요하는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5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간사로 임명되었기에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4057(종전번호 93가합33284)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김

서울

변론종결 : 1993. 8. 25.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의 순복음신문 1면 1단에 12포인트 활자로 2회에 걸쳐 「본지 지난 4. 4. 자 11면에 『과연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이라는 제목 아래 한편 전 재단간사 이. 목사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이. 목사는 현 재단간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정

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소갑제3호증(신문기사 사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1993. 4. 4.자 순복음신문 제11면에 『과연 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 『전 재단간사도 명예훼손 혐의 기소돼』라는 제목하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 이사장이던 박 ○ 목사와 교단차원 대책기구인 재산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 ○ 목사)가 마찰을 빚어오던 중 위 박 ○ 목사가 위 김 ○ 목사에게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동 기사 끝머리에 「한편 전 재단 간사이: ○ 목사도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기소됐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시 위 재단의 간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청인을 전 재단 간사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신청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재단 간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1호증(임명장), 소갑제2호증(재직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기사가 게재될 당시 위 재단의 간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사에서 위와 같이 신청인을 「전 재단 간사도」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신문의 독자들이 신청인이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재단 간사직에서 해임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사의 주된 취지는 재단 이사장인 위 박 ○ 목사가 위 김 ○ 목사에게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신청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 내용은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8.

□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권 오 창

판사 김 현 룡

학사업무, 학생·교사징계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청인측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0. 8.자 판결(92가합1646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1993년 10월 8일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강 교사의 해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프로그램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MBC-TV 1992년 9월 1일 22:00에 「PD수첩」 프로그램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 편에서, 「의정부 영석고등학교의 학사업무, 학생 징계, 교사 징계 등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단독적인 전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영석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2서울중재71).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측 주장을 다시 취재하여 방영토록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을 담당 PD가 현재 외국출장이어서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16462 정정보도

신 청 인 : 학교법인 영석(榮錫)학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

대표자 이사장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창 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9. 1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첫주에 방영되는 MBC-TV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되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화요일 21:00에 방영되는 MBC-TV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9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첫주에 방영되는 MBC-TV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별지 제2 정정요구문(이하 정정요구문이라 한다) 기재 내용을 방영하되 만일 이 판결선고일 현재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 화요일 21:00에 방영되는 MBC-TV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정정요구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관계

피신청인이 1992. 9. 1. 22:00 경부터 22:5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송

PD등이 취재하여 편집한 MBC-TV PD수첩 프로에서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3 방송내용문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박문인 정정보도요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강 교사 해임부분, 학사업무 운영부분, 봉급인상분 지급부분, 교사의 수위실 근무부분, 교장의 가묘작업 학생동원부분, 학생 4명 자퇴부분, 비품구입부분, 수세식 화장실 사용부분, 소외 박 자퇴부분 등에 관하여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주장 중 첫째, 강 교사 해임부분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외 강 교사를 해임했다」는 부분, 둘째, 교사들의 수위실 근무부분에 관한 「교사들이 순번제로 수위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 하교 지도만을 하고 있다」는 부분, 셋째, 가묘작업 학생동원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보도내용 중 가묘라고 한 부분은 가묘가 아니라 전쟁등 유사시 학교의 관계기밀서류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신속히 숨기기 위한 장소이다」라는 부분, 넷째, 비품구입부분에 관한 「학기초에 각 반에 학급비품을 일괄하여 전 학년에 지급하고 있으며, 중간에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급에서 일부 보충한 것이며, 선풍기는 학부모가 기증한 것이다」라는 부분, 다섯째, 수세식 화장실 사용부분에 관한 「수세식 화장실은 교사들의 전용화장실로서 샤워실 및 세탁시설 등이 학생들의 장난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 여섯째, 소외 박 자퇴부분에 관한 「강제자퇴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학생 부모 승낙하에 본인이 스스로 자퇴한 것」이라는 부분 등은 모두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

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의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먼저 강 교사의 해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내지 6,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의 1내지 3, 을제14호증, 을제16호증, 을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을제22호증, 을제24호증의 1내지 27의 각 기재와 증인 손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강 교사의 해임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손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 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 해임처분 무

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991. 9.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신청인이 소의 강을 해임한 것은 징계사유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신청인의 학사, 징계업무 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부당하게 교장 선생님의 전횡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가치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또는 가치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보도한 표현인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를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전횡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보도내용 가운데 첫째, 학사운영문제에 관한 「신청인은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를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교장 선생님의 전횡으로 한다」는 보도부분은 그 보도내용의 초점이 학사운영이 교장 선생님의 전횡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으로서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와는 다른 문제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교장의 전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는 학사업무협의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부분, 둘째, 봉급인상분 미지급부분에 관한 「신청인은 1990. 1. 및 2. 의 월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1991. 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교직수당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미지급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3.부터 월급이 인상된 것이고, 교직수당 인상분은 국고보조로 인하여 1992. 1.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분에 대하여도 국고보조가 되면 추가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그 미지급이유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셋째, 학생 4명의 자퇴처리 부분에 관한 「학생시위주동자 14명 중 4명만

을 자퇴시켰다」는 보도부분은 피신청인도 그 자퇴의 사유를 학생시위주동으로 이미 밝히고 있으며, 이 부분 보도는 자퇴한 위 4명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 영석고등학교의 다른 부당한 사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자퇴처리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자퇴처리의 이유를 상세히 밝혀 신청인의 자퇴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퇴학생 4명은 불량씨클을 만들었으며 허위사실의 불량유인물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소요를 선동하였는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므로 자퇴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교사 및 학생의 징계 등 학사운영의 처리에 있어서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 1990. 1., 2.월분의 봉급인상분과 1991. 8.부터 12.까지의 교직수당 인상분의 미지급 사유가 국고보조관계 때문이라는 부분 및 학생 4명의 자퇴처리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은, 그 정정이 모두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로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주장 및 항변은 소외 강 교사의 해임부분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내인 정정보도문 기재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8.

재판장 판사 김 길 중
판사 한 주 한
판사 문 일 봉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목 : 1992. 9. 1.자 MBC-TV PD수첩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 제하의 보도에 대한 관련당사자의 반론

본문 : 1992. 9. 1. 22 : 00경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소재 영석고등학교의 교사, 학생에 대한 징계문제, 학사운영문제 등을 다룬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관련당사자인 학교법인 영석학원(이사장)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1. 영석고등학교 문리과 교사로 재직해오다가 1992년 8월에 해임된 손 교사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학사업무라든가, 학생 징계, 교사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거의 단독적으로 일이 시행이 되고 부당한 교육적인 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여러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해임, 자퇴를 당하거나 길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방영하였으나, 사실은 영석고등학교의 학사업무는 교장, 교감 이하 주임교사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사에 관한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징계는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 영석고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손 전 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90년 1, 2월분 봉급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학교장이 착복하였고, 91년 8월 내지 12월분 교직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라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 영석고등학교에서는 1990년 1, 2월분 교사봉급인상분에 관하여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편성되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봉급도 3월부터 인상지급되었고, 1991년 8월에서 12월분의 교직수당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로 인하여 1월부터 인상지급하고 있었으며, 지난 분에 대하여도 추가 국고보조신청중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되면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3. 교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수위실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영에 대하여는 사실은 영석고등학교는 수위 권 씨와 이 씨가 수위로 상근하고 있었으며, 다만 교사들은 위 학교 앞 4차선 국도는 많은 차량들의 과속질주로 빈번히 사고가 발생되므로 등·하교시, 승·하차 보행질서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및 비담임교사로 구성하여 순번제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 영석고등학교 교장의 가묘 잠역에 교사,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를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위 내용 방영시 가묘라 지적하였던 부분은 위 학교가 전방지구에 위치한 점으로

인하여 일단 유사시 학교의 관계기밀서류 및 학생생활 기록부 등을 신속히 숨기기 위한 위장 장소였으며, 이른바 가묘의 봉분이란 것도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5. 영석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일로 4명의 학생을 자퇴시킨 내용을 방영한 점에 대하여 사실은 위 자퇴학생 4명은 「훈민정음」이라는 불량써클을 만들어 그 써클을 지휘하는 학생들로서 허위사실의 불량유인물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많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므로 그 당시 학생과장의 간곡한 설득과 지도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발하던 4명의 학생에 대하여는 부득이 징계위에 회부하였으나, 학생들을 위하여 자퇴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자퇴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6. 「영석고등학교 교실의 선풍기등 비품도 학생들이 돈을 몇천원씩 거두어서 샀다」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영석고등학교에서는 학기초에 각반에 학급비품을 일괄하여 전 학년에 지급하고 있으나, 중간에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학급에서 일부 보충 보완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학부모가 그 학급에 선풍기를 기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7.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여두고 학생들의 사용을 금지 시키고 외부에서 손님이 올때만 개방하는 전시용이라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방영시 지적된 화장실은 교사들의 전용 화장실로서 샤워실과 세탁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의 장난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방지코자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8. 「졸업을 일주일 앞둔 학생을 자퇴시켰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문제의 박 학생은 영석고등학교에서 계약 추천으로 선발한 군(軍) 장학생이었는데 당시 동계방학 전에 군소집영장을 받아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학교를 결석하고 가출 방황하자 그 학생의 부모는 군입대를 꺼리는 아들의 행위로 3년간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형편에 이르러 법적,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학생의 자퇴를 용인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담임선생이가출 방황하고 등교치 아니하는 학생을 만나 졸업이 가까웠음을 강조하며 설득 지도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자퇴 고집을 꺾지 못하여 부득이 학생 부모의 승낙하에 학생지도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담임선생이 자퇴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읽어본 부모가 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여 학생 스스로 자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2목록 정정요구문

1. 학교법인 영석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 해임당한 강 교사의 「노래수업 시간과

관련해서 시말서를 받아 두었다가 소요와 관련해서 해임당했다]라고 하는 강 교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방영하여 마치 위 강 교사가 부당히 해임당한 것처럼 방영한 것에 대하여 사실은 위 강 교사는 1990년 5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교과서 이외의 노래인 「터」「상록수」 등 그 당시 대학가의 데모가로 불리워지는 의식가요를 1,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 의해 학부모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거센 항의를 해와서 비로소 학교에서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 학부형들이 자식들의 의식화를 우려하여 강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자 동 강 교사는 다시는 그와 같은 교과서 이외의 의식화 노래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학부형들에게 써주어 일단락 되었으나, 그후 영석고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을 주축으로 소요를 일으키려 한 것이 학생들을 통해 학부형들에게 발각되어 학부형 총회에서 분노한 학부형들이 밴드부 지도담당교사인 강 교사의 사퇴요구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르지 않는 강 교사의 해임을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해오며 따라 영석고등학교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등을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2항 기재와 같다.
4.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3항 기재와 같다.
5.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4항 기재와 같다.
6.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5항 기재와 같다.
7.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6항 기재와 같다.
8.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7항 기재와 같다.
9.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8항 기재와 같다.

제3목록 방송내용문

송 PD : 지난 28일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교문 앞에서는 이 학교에서 해직된 해직교사와 강제로 자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부모가 나와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 교사 : 학사업무라든가 학생징계, 교사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거의 단독적으로 일이 시행이 되고 부당한 교육적인 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선생님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이 자퇴를 당하거나 길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형 : 교육자의 양심으로써 어느 정도 선처해 주면서 애들을 도닥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애들한테 그냥 자퇴원서를 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

송 PD : 영석고등학교에서 물리과 교사로 재직해 오다가 한달 전에 해임된 손 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손 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했었다는 일명 수첩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해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교사 : 제가 그날도 학력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 학력고사 시험지를 학생들 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추리러 인쇄실에 간 틈을 이용해서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은 교감선생님이 몰래 꺼내 갔습니다.

제 수첩을 꺼내서 복사했습니다. 저는 항의를 했죠. 왜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져서 그걸 복사를 하십니까? 했더니 오히려 교장선생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를 못해 오겠습니다. 제가 복사를 어떠한...

송 PD : 이 수첩은 사물이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이 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서 먼저 시달서를 써오라고 했고, 얼마후에는 교무회의에서도 쫓아내더니 결국은 해임을 시켰다는 것이 이 손 교사의 주장입니다. 이 수첩사건이 있는 지 한달반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학교측에서 왜 수첩을 꺼내 보았다는 것인지?

기 교사 :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부정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다음 홍난파의 가곡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아닌 것은 그런 말은 넣지 말라, 학생들한테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해서 그런 부정적인...

송 PD : 선생님들에 따르면 긍정형과 부정형의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로 부정문으로 된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러합니다.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였습니다.

송 PD : 명령불복죄란 뭐예요? 결재를 안받았다.

이 : 그렇죠.

송 PD : 근무태만이다 뭐 이런식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회자 :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안을 냈는데도 교장의 결재를 못받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직이 되고 파면을 당했다 이거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말이죠.

송 PD : 잘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90년에 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90년 10월에 학교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모의하다가 사전에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요와 관련해서 해임된 교사가 한명 있었는데요, 음악을 가르치는 강 교사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송 PD : 이 강 교사는 소위 노래수업 시간으로 해서 그해 5월에 시말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학생들의 소요가 발각되자 과거에 쓴 시말서와 관련해서 결국 해임까지 당하고 말았다는 주장입니다. 그후 경인일보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은 교장전횡 운운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문을 제소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 학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이 학교측에서 잘못 오보됐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가 판단할 때의 그 상황은 경인일보에 났던 상황은 다 옳은 것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열다섯분이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부터 학교에서는 계속 이 열다섯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오고 결국 이 순간까지 지금 여기 손 선생님이 그 사건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송 PD : 아 두분 다 거기 비서명 교사로 두 분다.

○ :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열다섯분 중 열한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의로 사표를 내거나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그런 수난까지 왔고 학교에 현재 네분이 계시는데 그 네분도 신분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송 PD : 문제의 영석학교는 설립자인 안 씨가 이사장 겸 교장으로 있습니다.

손 교사 : 89년 12월이 지난 90년 1, 2월이 되면 인상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이 학교 교장이 하는 말은 학교는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상된 월급은 3월달부터 주어야 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90년 1월 2월달 월급 인상분을 착복했고, 또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1년도 8월부터는 교직 수당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분도 지급을 안해주었습니다.

송 PD : 교직수당을 말이죠. 91년 8월에서 12월분까지를 안주었다면서요?

교감 :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입니다. 모든 급여는 다 주었습니다.

송 PD : 다 주었습니까.

사회자 : 그저 봉급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 PD : 그런데 이 명세표를 비교해 본 결과 90년 1, 2월분의 봉급은 인상되기전 금액을 받았고, 3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1년 8월에서 12월분의 교직 수당도 1인당 4만원씩 되는 인상분을 몇달씩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 PD : ...에 지금 여기는 학교의 뒷산입니다. 올라가보면 교사 뒤편으로 교장의 가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과 교사들을 동원해서 가묘를 조성하게 하고 묘 주변을 늘 손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본 것이 가묘였는데 풍수지리상으로 위쪽이 좋다 이래서 옮겼다는군요.

그 외에도 갖가지 잡역에 교사들이 동원되는 통에 수업준비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얘기였습니다.

송 PD : ...이 학교는 2년에 한번꼴로 학생소요가 일어날 만큼 학생들이 당하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학생들이 시위를 준비하다가 사전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시위주동자로 몰린 학생은 14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4명만이 강제로 자퇴를 당했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불만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퇴생 이 : 머리가 2부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렇게 잡아서 넘어가면 다 잘라 버리고.

송 PD : 그리고.

자퇴생 김 : 그리고 선생님들이 줌 애들 너무 때리는 것 같고요.

자퇴생 이 : 운동장에서 비오는 날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 가지고 대가리 박아시키고, 구두발로 밟고, 또 선생님이 술먹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때리고, 육성회비, 학생회비, 그런거요, 전혀 저희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요. 또 환경미화한다 그러면은 페인트 칠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돈 거둬서 칠하고요, 또 뭐야 학교비품은 그것도 학생들이 학급비 거둬가지고 사놓고...

송 PD : 지금 보시는 이 교실에 있는 4대의 선풍기도 학생들이 돈을 몇천원씩 거둬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놨지만 평소에는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잠가두었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선도를 한 다기 보다는 대부분 강제자퇴를 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지난 2월에 졸업과정까지 다 마치고 졸업을 1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학생 하나가 3일간 결석을 했다고 그래서 강제자퇴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자퇴생 박 아버지 : 졸업하기 일주일전 3일 결석에 이걸 해버린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며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지시했을 때 안했을 때는 그 선생도 잘린다니 그러니까 선생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송 PD : 이 글씨는 누가 쓴거예요.

박 아버지 : 담임선생님이 써 왔죠.

송 PD : 담임선생님이 써준거예요?

박 아버지 : 써갖고 온 거예요.

사회자 : 담임선생님이 자퇴서에 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어서 강제자퇴를 시킨다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네.

송 PD : 네 어떻게 교육자로서 이런 처사를 할 수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사회자 : 네...

송 PD : 사학은 개인이 세운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교육의 뿌리로서 사학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운영하는 분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육영사업에 참뜻을 거듭 확인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자 : 어쨌든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분규가 생길 때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어른들이 정의와는 거리가 먼 짓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

.....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15.자 결정(93카기388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15일 황 교수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대학입시부정에 상명여대 교수인 신청인 황 씨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전문브로커로 활동해 거물급 4인방의 한 사람이라고 보도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찰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부정입학을 알선해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상 이 사실도 정정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이 구하지도 않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3년 2월 9일자 사회면에 『不正 입학 알선 「물밑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3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서울시 경찰청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기사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3카기3887 정정보도

신 청 인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종 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란 하단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위 제목의 옆 및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3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의 1992. 2. 9.자 사회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외 2인의 사진과 함께 『부정입학 알선 물밑커백션』이라는 제목과 『거물급 브로커 4인방에 수사초점』이라는 소제목 아래 「광운대 입시부정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대학과 대학, 대학과 고교를 연결해 사립대 부정입학의 비밀통로역할을 해 온 <거물급 4인방>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양대 방 사무부 처장, 상명여대 황 교수(49, 수배), 대일외국어고 김 교사, 강동고 전 재단이사 이 씨 등 4명은 광운대 뿐 아니라 상당수 사립대학들을 학부모들에게 연결시켜 온 전문브로커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강남일대의 부유한 학부모층을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은 5억원대, 중위권 대학은 2억~3억원대」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며 공공연하게 대학 고위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한편 대리시험에도 간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학부모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를 조 교무처장에게 알선했던 황 교수는 지난 90년부터 2년 동안 상명여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역임하며 사립대학 교무처장협의회등을 통해 친분을 맺어둔 다른 대학 보직교수들에게 접근, 부정입학을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학부모 이씨가 경찰에서 딸의 가정교사를 하던 황 선생이라고 진술했던 황 교수는 상명여중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재단의 뒷받침으로 총장비서를 거쳐 지난 86년 영문과 교수로 임명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경향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향신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피신청인의 사회부 기자 4, 5명이 93학년도 대학 입

시 당시의 광운대 부정입학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수사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는 등으로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다음 게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사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한 학생을 광운대학교에 부정입학하도록 알선해 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정정보도문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율제1호증의 5,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 11(통보서), 14(판결), 소율제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증언을 종합하여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굳이 밝히고 싶다면 피신청인이 이를 정정보도가 아닌 기사로써 게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의 활자는 13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본문활자의 크기, 기사내용의 신청인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 본문 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크기와 활자를 신청 취지보다 작게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5.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정정보도문

경향신문은 1993. 2. 9.자 사회면에 『부정입학알선 물밑커넥션』이라는 제목과 『거물급브로커 4인방에 수사초점』이라는 소제목으로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상명여대 황 교수는 사립대 부정입학의 비밀통로 역할을 해온 거물급 브로커 4인방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수 사립대학들을 학부모에게 연결시켜 온 전문 브로커이고, 대리시험에도 간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 교수는 입시부정 전문브로커가 아니고 다른 입시부정 브로커들과도 연계된 사실이 없으며 대리시험방법에 의한 입시부정에 간여한 4인방의 한 사람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신청인의 진술서 요지를 보도하면서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제목 및 편집자주에
표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는 이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6.자 판결(93카기325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6일 통일민주당지구당창당방해사건으로 수감중인 이 씨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인 동아일보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위 「창당방해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자신의 진술서 내용을 동아일보가 발췌·보도하면서 진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을 잘못 보도하였다 하여 동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문제의 기사 앞부분에 신청인이 진술서를 통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신청인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게 하였고, 진술서의 취지 및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발췌·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신청인이 진술서에서 안전기획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제3자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토록 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면서 「진술서의 요지를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가 1993년 6월 24일자 30면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 당부』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를 요약 게재하면서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 등의 소제목 붙이고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보도하자,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서에는 「공작정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자신이 장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식사비조로 돈을 받아 그 자금을 폭력적인 방법의 방해활동에 사용토록 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48). 피신청인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신청인에 대한 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3254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李)

서울

현재 구치소 수감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안 봉 진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일자 전체의 동아일보 제30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9cm, 세로 4단의 크기로, 2단 중앙에는 2.5×2.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1993. 6. 24.자 동아일보 제30면에 실린 것과 동일한 것)을 싣고, 1단 중앙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4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 중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4cm, 세로 5단으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2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의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 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당부』라는 큰 제목하에, 기사 중간부분에 『장 씨, 만날 때마다 1억원씩 쥐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라는 작은 제목과 기사 우측 상단에 『「창당방해」 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작은 제목을 붙이고, 「이씨는 검찰수사와 법원재판과정에서 장문의 자술서를 제출,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에게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위에서 말하는 자술서는 신청인이 1993. 3. 2.자로 서울지방법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소갑제2호증의 1)와 같은 해 4. 18.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소갑제2호증의 2)를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갑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각 진술서에서 정치입문과정, 신한민주당의 창당 및 활동과정, 국가안전기획부장 장 4 만나게 된 경위 및 대화내용, 신한민주당의 분당과 통일민주당 창당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그에 대한 반대활동,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입장 등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단지 신한민주당의 주류측이 분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는 데에 분개하고 창당반대 취지의 현수막부착, 완장패용,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하려고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각 진술서의 요지를 발췌·보도하는 형식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기사 앞부분에서 신청인이 자술서를 통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위 각 진술서에서 신청인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었음을 자인하는 기재를 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각 진술서의 취지 및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발췌·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신청인이 위 각 진술서에서 위 이 와 함께 위 장 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가안전기획부가 의도하는 공작정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신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점과 위 이용구를 통하여 배후의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건네주어(기사내용 중에는 자금을 위 이 에게 주었다고만 표현했으나 기사 중간의 작은 제목을 『「분당반대자금」이 씨 통해 건네』라고 씀으로써 전체적인 취지가 신청인이 위 이 를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건네 준 것처럼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각 자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끔 만들었다 할 것이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각 진술서의 요지를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동아일보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별지 제1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첫째, 피신청인은 위 기사 중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부분은 기사의 표제에 해당하고,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는 부분과 괄호안에 넣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부분은 편집자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각 진술서의 내용 중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사성 및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고 각 진술서의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독자의 이해편의를 돕기 위한 표현방식일 뿐이며 특히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는 부분은 기사도입문구에 불과하여 사실주장도 아니므로 위 각 기사부분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작성한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상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로 이를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독자들로서는 마치 위 각 진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므로 이 부분도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신청인의 진술서를 공표한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소정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제삼은 기사부분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각 진술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위에서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넷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내용을 위 기사와 비교하여 보거나 신청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이를 게재할 경우 독자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고, 한편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분량적인 면에서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

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진술서의 요지라 하여 보도한 것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독자를 혼란케 한다고 할 수 없고(신청인에 대한 앞서 본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정보도를 구하는 각 부분이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피신청인이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은 현재 심리중인 창당 방해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씨의 변호 및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은 별지 제1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가로 14cm, 세로 5단의 크기로 게재하여 달라고 구하나,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9cm, 세로 4단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6.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1〉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 당부』라는 큰 제목 아래 기사 중간부분에 『장 씨, 만날 때마다 1억 원씩 쥐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 우측 상단에 『「창당

방해」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작은 제목을 붙이고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에게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말하는 자술서의 실제 명칭은 진술서로서 그 진술서에는 「5공말 공작정치」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고, 이 씨가 5공말 공작정치에 말려들었고 토심회라는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이 씨가 반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필요한 분당반대자금을 이 씨를 통해 타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돈이 20여개 통일민주당 지구당을 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동아일보는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창당방해」 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제목 아래,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를 통해 건네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이 씨가 쓴 진술서에는 「5공말 공작정치」라는 문구가 없고,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 기사를 취소, 정정하며, 위 기사의 문맥전체를 볼 때 마치 이씨가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어 20여 군데의 창당대회를 방해한 것을 스스로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본의 아닌 일이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은 현재 심리중인 창당방해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씨의 변호 및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

횡령의혹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1.자 결정(93카기378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4.자 결정(94타기155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11일 정립회관 관장 인 황 씨가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않았고, 기사 중에 신청인의 반박취지 일부가 실렸다고 하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측이 비록 신청인측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1993년 4월 16일자 1면과 3면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 『정립회관 사건 총체적 부정양상』 제하의 기사로 황 씨의 공금횡령 사실,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 등의 비리가 있다고 보도되자,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99).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을 근거로 한 기사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의 정정보도게재 결정후, 피신청인측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이 결정을 송

달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決 定 文

사 건 : 93카기3786 정정보도

신 청 인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피신청인 : 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기 섭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제1면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 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은 44급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그 여백에 가로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두고, 그 하단에 『황 관장 윤상 장학금 횡령의혹은 낭설』이라는 제목을 두며, 앞의 제목은 0호 활자로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의 크기로, 뒤의 제목은 특호 활자로 가로 30.4센티미터, 세로 4.3센티미터의 크기로 하고,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5호 활자로 하며, 정정보도내용에 윤상장학금 가운데 1차 기탁금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인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의 1993. 4. 16. 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 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

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같은 신문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 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정립회관 직원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던 정립회관 회계비리에 대한 사건은 윤상장학금 횡령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 막연한 추정이나 감정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라고 쓰고, 그 이하에서 『황 관장 장남의 부정입학에 관한 의혹』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의 장남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이 직원들에 의해 제기... 직원들은 그가... 실력으로 광운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황 관장의 장남은... 연합고사에 낙방한 이후 대원외국어고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부정입학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신과 정 씨 명의로 땅을 소유... 특히 정 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은 79년에 구입하고 91년에 명의 이전을 하기까지 정립회관 직원 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황 관장과 정 씨의 개인 명의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시가기준으로 환산하면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정립회관내 영수증 처리문제』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과 정 씨의 회계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굴비를 샀다든가 아니면 간장을 구입한 경우까지 회관영수증으로 둔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그러나 이들의 가짜 전표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기자가 수사관이냐며 반발』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한편 윤상장학금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던 황 관장은 지난 15일... ‘기자가 수사관이냐. 자료는 지금 내 손에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자료를 넘겨 줄 의무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이사회에 사안을 넘기고 공개여부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해명을 포기. 그러나 취재결과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신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정립회관의 회계장부, 전표 등 서류를 조사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다음 게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을제3호증의 1내지 5(각 신문), 소을제4호증의 10(각 계산서), 소을제5호증(성적표), 소을제6호증의 2, 19(각 공소장), 5, 10, 12, 13, 16(각 진술조서), 8(확인서), 9, 11, 22(각 진술서), 14, 17(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피신청인은 위 기사 중 윤상장학금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해명하는 바를 같은 기사에 포함시켜 기사화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2호증의 1(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앞서 본 위 신문의 제1면 기사란 중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에 『「회관내 차입금형태 처리」 해명, 장부상 기록 전혀 맞지 않아』라는 부제목을 두고, 기사 본문 내용 가운데도 「직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황 관장은 윤상장학금의 기금은 1차분 1,500만원이 전부이며 직원들이 주장하는 2차분 1,000만원은 윤상 군의 부친이 정립회관에 기부금으로 회사한 것」이라고 밝히며, 「윤상장학금 1,500만원은 87년도 정립회관의 운영이 어려울 때 차용해 회관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원상회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라고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기사의 부제목 자체에 신청인의 해명은 장부상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 1, 3면에는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무색하게 하는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 내용과 「윤상장학금에 대한 협회자료에 의하면 1차분 1,500만원에 대한 장부는 있으나 이 기금을 차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정립회관의 회계자료에도 윤상장학기금이 유입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난 12일부터 기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회관의 총무과 직원들이 이틀동안 윤상장학기금의

유입흔적을 찾았으나 기금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등의 피신청인 측의 취재결과가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기사 중에 신청인의 반박취지가 일부 실렸다 하여 이로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청인은 정정보도내용에 윤상장학금 가운데 1차 기탁금 15,132,707원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 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소을제6호증의 16(진술조서-이)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1차 기탁금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 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인 신청외 이 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을제6호증의 14(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소을제6호증의 8(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바, 따라서 위 정정보도청구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홍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낭설』이라는 제목을 두고, 앞의 제목은 0호 활자로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의 크기로, 뒤의 제목은 특호 활자로 가로 30.4센티미터, 세로 4.3센티미터의 크기로 하고,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5호 활자로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게재 면의 위치 및 부위, 제목 및 본문 활자의 크기, 전체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은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홍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라고 하나로 붙이되 정정보도문 자체의 크기를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정하는 외에 제목 자체의 크기를 따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고,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의 활자는 44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11.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은 1993. 4. 16.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황 씨의 장남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와, 황 씨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땅을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 씨와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시가로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연대 씨와 그 남편이 개인적으로 굴비나 간장을 산 것도 정립회관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가 윤상장학금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다가 기자에게 수사관이냐고 따지면서 해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씨는 윤상장학금 중 1981. 12. 18.에 1차로 기탁된 금 15,132,707원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어렵게 장학사업을 꾸려나갔다가 정립회관의 보조사업비 수행 지원비로 이를 전용한 후 결산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1986. 3. 24.에 2차로 기탁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1987. 3.부터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가수대체금으로 일시 지출하여 가수금으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며, 황 씨의 장남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고, 황

씨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4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립회관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에 대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기자에게 수사관이냐며 반발한 이유는 자료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립회관의 감사 등의 자문을 받아 통상적인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해 심사받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

정정보도신청인 황

決 定 文

사 건 : 94타기1557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채 무 자 : 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간 한국장애인 복지신문 제1면 좌측상단부분에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형 영의혹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은 44급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그 여백에 가로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하루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3카기3876 정정보도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4.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이 동 원

판사 조 윤 신

〈별지〉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은 1993. 4. 16.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황 씨의 장남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와, 황 씨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땅을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 씨와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시가로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와 그 남편이 개인적으로 굴비나 간장을 산 것도 정립회관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가 윤상장학금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다가 기자에게 수사관이냐고 따지면서 해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씨는 윤상장학금 중 1981. 12. 18.에 1차로 기탁된 금 15,132,707원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어렵게 장학사업을 꾸려나가다가 정립회관의 보조사업비 수행 지원비로 이를 전용한 후 결산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1986. 3. 24.에 2차로 기탁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1987. 3.부터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가수대체금으로 일시 지출하여 가수금으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며, 황 씨의 장남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고, 황

씨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4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립회관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에 대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기자에게 수사관이냐며 반발한 이유는 자료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립회관의 감사 등의 자문을 받아 통상적인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해 심사받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

정정보도신청인 황

□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며, 방송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특정단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2. 20.자 판결(93카합110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0일 한국 화랑협회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내용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방송내용은 미술계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촉진제가 되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제작, 방송된 것이지 신청인 협회를 포함한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은 아닌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방송하여야 한다면 언론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나 존재의 바탕이 없어지게 된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 등 법익 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문화방송이 1993년 6월 15일 「집중조명 오늘」 프로그램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편에서 한국화랑협회의 감정 비공개주의에 대하여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자 신청인은 언

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4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협회의 비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해 가짜그림이 매매되는 미술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이어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 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1107 정정보도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韓國畫廊協會)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2의 2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도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변론종결 : 1993. 11. 2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첫 부분에서,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화요일 22 : 55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영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최초 방영시에, 만일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별지 제2 정정요구문 기재 내용을, 제목은 이 사건 문제된 방송의 화면 중 「감정위원수」와 같은 크기, 모양 및 색깔의 문자로, 본문은 같은 방송의 「첫번째 답변」과 같은 크기, 모양 및 색깔의 문자로 한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언론의 공개이익만을 내세우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다시, 위 방송에서 신청인의 주장도 충분히 함께 방영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인정의 방송내용과 정정보도내용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감정의 비공개주의에 대하여 비리에 관련이 있는 듯이 보도한 부분에서 신청인 협회 사무국장인 위 의 발언으로 「감정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감정위원과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 이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가 어디서 암흑가에 있는 분들이 가짜그림을 기업체에 강매했다. 그것을 자기가 기업체에 강매할 때는 진품이라고 해서 강매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몇 분 안되는 감정위원이 노출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는 부분을 방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는 감정의 비공개주의를 채택한 이유로서 감정위원에 대한 청탁예방과 감정위원의 신변보호를 들고 있는 신청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방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방송한 신청인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로 편집되어 신청인의 주장과 다른 취지로 보이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해명 기회를 구하고 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나아가,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는 방송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 중 「이중섭 씨의 유작」이라는 표현은 「이중섭 씨의 유작으로 추정되는 내지 주장되는 작품」의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어서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표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방송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에게 문제의 그림 2점이 이중섭 씨의 유작이라는 의미 내지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단순히 지엽발단적인 표현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다시 방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의 약속 파기로 무산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증인 허 정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협회 회장 위 김 은 1993. 7. 말경 피신청

인 회사의 제작국장 소외 하 을 만나 문제된 작품의 진위에 관하여 신청인 협회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하겠다는 위 하 의 제의를 받고 이를 일단 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방송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제의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결국 위 방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사실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론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게재 내지 방송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피신청인이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제작한 내용의 방송을 신청인이 거부하였음을 들어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방송할 정정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정정보도문의 방영이 원보도와 동등한 공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첫 부분에서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화요일 22:55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의 반박 및 해명 내용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0.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중
판사 송 영 철

〈별지 제1〉 정정보도문

제목 : 정정보도문

본문 : 1993. 6. 15. 22:55부터 집중조명 오늘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 아래 본사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의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관련당사자인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1.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의뢰된 그림은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고 방송하였으나, 위 그림을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2. 「한국화랑협회가 가짜라고 판정한 그림을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방송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의 감정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매수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화랑협회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우리는 여기서 한국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 「한국화랑협회는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라면서 감정위원 수와 외부인사 위촉에 관하여 위 협회의 답변을 첫번째 답변, 두번째 답변으로 나누어 순차로 화면에 문자로 표시한 방송을 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는 감정위원의 정수와 감정기일에 출석한 감정위원수를 나누어 답변한 것이지 답변이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5. 「한국화랑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도 아닌 돈을 받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집니다. 싫으면 안오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없습니다」라면서 협회장이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을 방송하였으나, 협회장의 위 발언은 취재기자가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협회장이 반증자료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자 취재기자가 그래도 끝까지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답변한 것인데 앞부분을 삭제하여 전체 대화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준 것입니다.

〈별지 제2〉 정정보도문

제목 : 정정보도문

본문 : 1993. 6. 15. 22 : 55부터 집중조명 오늘 「미술제,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 아래 본사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의 미술품 감정과 관련하여,

1.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고 방송하였으나 그 그림을 이중섭의 유작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화랑협회는 이중섭의 유작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을 의뢰받은 그림 두점을 가짜라고 판정했다 라고 정정합니다.

2.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가짜라고 판정한 그림을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아보니다」라는 부분은 그 근거가 없는 왜곡된 표현이므로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니다」라고 정정합니다.

3. 본사는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의뢰된 그림은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고 방송하였으나 위 그림을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그림이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정정합니다.

4. 본사는 「우리는 여기서 한국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5.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내부규약을 들어 감정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됩니다.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 화랑협회는 왜 이런 비밀주의를 택하고 있는가」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화랑협회는 이해관계자들이 감정위원회에 미리 청탁하는 것을 예방하고 감정위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감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감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의혹이 증폭된다.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은 시청자를 오도할 염려가 있는 절적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6. 본사는 「비공개를 규정하였다는 한국화랑협회의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라면서 감정위원 수와 외부인사 위촉에 관하여 위 협회의 답변을 첫번째 답변, 두번째 답변으로 나누어 순차로 화면에 문자로 표시한 방송을 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의 답변은 감정위원의 정수와 감정기일에 출석한 감정위원 수를 나누어 답변한 것이고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졌다」는 본사의 방송은 잘못된 것이므로 「답변이 달라진 적은 없다」라고 정정합니다.

7. 본사는 「한국화랑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도 아닌 돈

을 받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집니다. 싫으면 안오면 될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없습니다」라면서 협회장이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의 위 발언은 본사 취재기자와의 많은 대담 내용을 본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뒤를 잘라버려서 전체 대화의 내용과 다르게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부분만 부각시켜 시청자에게 나쁜 인상을 준 것이며 본사가 이를 횡포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별지 제3〉 방송내용문

해설자 : 다음은 미술품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인 줄 알고 산 그림이 가짜로 드러나는 소동이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사건은 좀 해괴합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라고 판정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 가짜를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니다.

기자 : 한국현대미술의 유일한 감정기구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지난해 7. 16. 작품 2점을 의뢰받았습니다.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중섭 씨 작품은 시중에서 호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진품으로 판정받았다면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감정결과는 가짜,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6개월이 지난 올 2월 그 그림 2점을 3억원에 팔라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한푼 가치없는 가짜그림에 3억원을 주겠다고 그것도 우습고, 10억 한다는 그림을 3억원에 넘기자니 그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 결국 이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기자 : 그러나 화랑협회는 감정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가짜라고 판정한 이유와 근거의 설명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됩니다. 감정을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를 규정했다는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

(화면은 감정위원 첫번째 답변 9명 + α 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신청인 협회 사무국장) : 아홉 분의 감정위원이 계시고 또 특정한 작품을 감정할 때에는 특별히 그 작가의 작품을 잘 보시는 분을 특별감정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따로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죠.

허 : 9명이 정원이죠.

기자 : 정원이고.

(화면에 두번째 답변 9명의 과반수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이면 감정이 구성됩니다.

기자 : 그러면 다섯 명이면 항상 할 수 있습니까.

허 : 다섯 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화면에 외부인사위촉(공정성 보장조항) 첫번째 답변 외부) 내부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아홉 분 같으면 소위 과반수 다섯 분은 외부 분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하고 4명 이내는 화랑협회 회원으로 합니다.

기자 : 내부위원은 외부위원보다 적어야 된다는 이런 규약이 있는 거죠.

(화면에 두번째 답변 상황따라 외부<내부, 외부> 내부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 그것은 규약의 운영문제인데 정원을 만들 때, 처음에 감정위원을 위촉할 때 과반수, 다시 말하면 5명 이상이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4명 이하는 화랑협회 회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연락을 하면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안나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외부인사가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외부인사가 적을 때도 있죠.

기자 :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 화랑협회는 왜 이런 비밀주의를 택하고 있는가.

허 : 감정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감정위원과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 이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선가 어디서 암흑가에 있는 분들이 가짜그림을 기업체에 강매했다. 그것을 자기가 기업체에 강매할 때는 진품이라고 해서 강매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몇 분 안되는 감정위원이 노출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 : 같은 이유라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판사와 검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판결이유 또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기자 : 아무리 화랑협회가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무료도 아닌 돈을 받고 하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커집니다. 감정료는 작품 한 점당 350,000원입니다.

(신청인 협회 회장 김 이 말하는 장면을 소리가 전혀 안나는 화면으로 처리하여 보 이면서)

싫으면 안오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 없습니다.

김 :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

.....

신청인의 아스콘공장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공장의 공해유발 요인도 과장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2. 27.자 판결(93카기76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제4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7일 김 (부영아스콘 대표·부천시 오정구)씨가 (주)중앙환경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심판 소송에서 「아스콘공장의 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 위 공장의 공해유발 요인에 관한 부분도 일부 과장된 것이 명백하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중앙환경신문이 1993년 8월 2일자 제1면 『아스콘공장 설립 썬 민관 마찰』 등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단체들과 행정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공장설립허가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한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81). 중재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부천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로부터 적법한 절차 및 협의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을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이 사실에 근거한 기사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등의 위 아스콘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27조 단서 조항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며,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 사일로를 설치해 놓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성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760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김

부천시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환경신문사(中央環境新聞社)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의 28

대표이사 유 정 환

변론종결 : 1993. 12. 6.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9일 이내에 주간 중앙환경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2단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각 인쇄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 중앙환경신문의 제1면 전면에 걸쳐 또는 5대 일간지의 제1면 광고란에 5단 전통 크기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의 보도

소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신청 외 우 과
 공동하여 1993. 4. 23. 부천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지상에 아스콘제조
 공장의 신설허가를 받고 위 공장의 신축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주
 간 중앙환경신문 1993. 8. 2.자 제1면에『아스콘공장설립 썬 민관마찰』,『부천, 먼지 다발지
 역으로 생활환경 크게 위협』이라는 제목하에, 위 아스콘 공장의 설립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단체들과 행정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주민단체들이 위 공장설립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4단기사를 게재하고, 그 관련기사로 제5
 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이라는 제목하에 그 중앙 하단에 부천시와 같은 「개발유도권
 역에서는 시장 등이 조성하는 공업단지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신설이 가능하나 공해공
 장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제6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부천시에 아스콘
 공장 웬말』,『주민 법규전면 손질촉구』,『조합 허가관련 <의혹> 제기』라는 제목하에,「아스
 콘공장이 이곳에 들어설 경우 쇄석, 모래, 필러 및 아스팔트 등을 가열, 혼합하는 제조과정
 의 특성상 골재 및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를 위한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분진, 매
 연은 물론 악취, 소음, 진동 등 과도한 공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곳 관계자
 들은 「이러한 공해는 인체에 유해함은 물론 인근공장의 조업능률 및 품질을 저해시키는
 등 생활환경을 무디게 한다」면서 「취락지역 및 공업지역 인근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위험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스콘공장은 비도시형 공해성
 공장으로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수도
 권내 개발유도권을 비롯한 5개권역에서 아스콘공장의 신, 증설이 일체 제한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지난 88년과 89년에 시내에 소재하고 있던 서울시 직영 아스콘
 공장 등 4개 공장을 이전했으며 인천시에서는 가좌동 공업지역내 아스콘공장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아스콘공업협동) 조합측은 아스콘 사업 허가조건이 여타
 중소기업보다도 상당히 까다로운 점을 지적 이번의 아스콘 공장설립과 관련 의혹마저 제
 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마치 위 공장설립 허가가 관
 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나아가 제7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제조과정서
 엄청난 공해유발』이라는 제목하에, 「아스콘 제조과정은 전체적으로 밀폐되지 않은 노천
 설비에서 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아
 스팔트 원료(핏치, 콜타르)와 혼합, 이를 ...열처리하여 포장제품을 만드는 순서로 이루어
 진다.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골재 등 원자재 투입, 플랜트에 운반투입, 제품출하등에 따르는

중기 및 대형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분진,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통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건식집진장치(백필터)는 습식에 비해 집진효과가 우수하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역시 거의 전면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신청인 등의 위 아스콘공장이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런데 부천시 삼정동에 설립되는 신청인 등의 위 아스콘 공장은 비록 위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제한정비권역에 해당하나 관련 타 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고, 또 아스콘 제조공정은 일부 밀폐되지 않은 노천설비에서 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제조하는 것이 보통공법이나 삼정동에 새로 설립되는 위 아스콘공장은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골재 사일로를 설치해 놓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상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기사 중 위 아스콘공장의 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 위 공장의 공해유발요인에 관한 부분도 일부 과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신청인은 위 아스콘공장의 설치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된 것이며, 아스콘 공장의 주요 생산기계를 선진 외국에서 도입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아스콘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포함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갑 3, 4, 5호증만으로는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 발행의 위 주간신문 제1면에 전면기사의 크기로 또는 5대 일간지의 제1면 광고란에 5단 전통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는 피신청인이 발행하지 아니 하는 다른 신문에 게재할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고, 그 크기도 정정보도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비추어 가로로 조판되는 피신청인의 신문에 2단 기사의 크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9일 이내에 주간 중앙환경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2단크기로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인쇄하여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7.

재판장 판사 김 정 술

판사 지 영 난

판사 이 규 철

제1 목록 정정보도문

본보 1993. 8. 2.자 제1면의 일부 및 제5, 6, 7면의 전면에 게재된 아스콘공장 설치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 아스콘 공장의 허가문제와 관련하여 삼정동에 설립되는 아스콘 공장허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에 해당하나 관련 타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다.

2. 아스콘공장시설 및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아스콘제조공정은 일부 밀폐되지 않은 노천에서 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제조하는 것이 보통공법이나 부천시 삼정동에 새로 설립되는 아스콘공장은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상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청구인 김

□

온천개발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고 투기사업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주지방법원 1994. 6. 16.자 판결(94카합27)

事實概要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994년 6월 16일 (주)제주온천이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신문이 『의혹, 분출되는 현안(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진단)』이라는 제하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라고 단정짓고, 과업지시서 및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는 용역업체의 중간보고서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정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인 만큼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은 제주신문 1993년 12월 9일자, 10일자, 11일자 등의 기사 및 사설에 『투기위한 유령용역』, 『용역성과품 법규묵살』 등의 제하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제주중재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27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주온천

제주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제주시 연동 2036

대표이사 김 대 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창 원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주신문 제1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덕 활자로 우측단 중앙에 세로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라는 소재목은 4호 고덕 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의 성명은 본문 활자로 위 소재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 활자 200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본문)의 기재와 같으나, 다만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소외 남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북제주군에 제출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 유: 각 성립에 다름 없는 갑제 1, 2, 10호중의 각 1, 2 갑제8호중의 1내지 10, 갑제9호중의 1 내지 14, 갑제13호중의 12, 27, 28, 30, 31, 33, 34, 35, 36, 37 갑제14호중의 1 내지 39, 을제29 내지 32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8. 11. 1.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의 온천개발과 그에 부수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8. 9.경부터 위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 및 조사용역비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하여 오던 중 1989년 경 위 일대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조사를 거쳐 1990. 8.경 관찰청인 북제주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후, 현재 온천공 5개공과 지하수 3개공을 확보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입안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신청인이 개발한 세화(송당)온천지구가 신규관광지로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지방일간지인 제주신문의 제1면 또는 제2면의 우측 상단부에 가로 13내지 17cm, 세로 7~8단의 크기로 『의혹, 분출되는 현안(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진단)』이라는 제목 하에서 기획 시리즈를 이른바 박스기사로 연재하면서 1993. 12. 9.자에는 『투기위한 유령용역<1>』이라는 제하에 같은 달 10.에는 『용역성과품 법 규묵살<2>』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추진중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과 그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11.자의 제3면 사설란에도 이에 관한 사설을 게재한 사실, 위 기사 및 사설(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은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93. 12. 10.자 1면 기사 하단), 위 온천개발사업이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私意)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93. 12. 9.자 1면 기사)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 12. 10.자 3면 사설)고 보도하면서 「카지노의 대부로 알려진 J씨 등 타지방 사람들이(위 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85. 4. 다 투기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사설)라는 등의 내용까지 덧붙여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임을 단정적으로 거론한 후에, 위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이 소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용역을 「투기위한 유령용역」(93. 12. 9.자 1면 기사 표제)으로 단정하면서 「군사독재정권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대규모 인허가 이권을 추구한 이들 정치, 경제적 강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공개발 계획에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공익을 가장하여 꾸며 낸 것

은 바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일부 기술용역업체였다」, 「신제주, 기성시가지와 거의 맞먹는 대규모 관광지계획을 도 당국은 제주대 용역단의 동의도 없이 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켰는데, 종합계획의 최대관광지구수립계획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私慾)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말인가!」(93. 12. 10.자 3면 사설)라는 등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당국과 용역업자의 배후에서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조정하여 꾸며낸 것처럼 표현하고, 세부적으로는 위 용역이 ① 과업지시서와 중간보고서도 없이－북제주군은 과업지시서 조차 용역업자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용역수행 중 중간보고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93. 12. 9.자 1면 기사), 문제의 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도 중간보고서도 없이 한낱 「통과절차」로 작성되었다.(93. 12. 10.자 사설, 다만 같은 날짜의 기사 소제목 및 본문에는 당국이 과업지시서는 있었다고 밝혔음을 보도하고 있으나, 그 소제목의 활자 크기는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전날의 소제목보다 크기가 작다), ② 법절차를 무시하고－용역참가 기술진이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유령 용역보고서를 기본바탕으로(93. 12. 11.자 3면 사설)－행하여졌고, ③ 용역내용도 부실하다－범법부실보고서(같은 사설)－는 식으로 표현하여 용역수행과정이 불법이고, 그 성과품인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단정지은 후,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私意)에 의하여 계획되는」,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이 용역은 누가 어떤 경위로 추진했는가?」(93. 12. 9.자 1면 기사),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93. 12. 10.자 1면 기사), 「군사독재정권 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대관광지구 계획수립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 12. 10.자 3면 사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위 기사와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 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12.자로 『온천법으로 종합계획<3>』이라는 제하에서 「특별법 배치된 추진 배경의문」이라는 기획 기사를 게재한 사실, 한편 신청인측이 위 12. 9.과 10.의 보도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를 받았고 중간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법규를 묵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해명광고를 같은 달 11.자로 제주지역의 다른 신문인 제민일보와 한라일보에 게재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14.자로 『왜곡석명 의혹충폭』이라는 제하에 엉뚱한 개발사업자가 해명을 하고 있으며, 당국의 용역업자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남광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에 엔지니어링기술진

홍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요구됨에도 그것이 없는 것은 유령용역, 법규위반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그 후에도 신청인은 위 기획시리즈를 연재하여 같은 달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온천개발사업과 그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위 조사용역에 대하여 위 같은 취지의 기사를 연재하고 사실을 게재하여 왔으며, 그 이외에도 같은 달 17.자에는 『세화, 송당온천특혜배제』, 『투기꾼과 관, 경 유착 의혹』이라는 제하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자에는 『『세화, 송당지구 온천개발』 부동산투기성 사업이다』라는 제하에서 그 지역의 개발반대주민 대표의 주장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제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법익에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위 기사 등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할 관청인, 북제주군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받은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그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성과품인 용역보고서를 북제주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용역의 발주, 수락, 납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신청인이 위 용역에 관한 기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기사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위 기사등에서 신청인을 명백히 거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등에서 위 온천지구의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라고 단정한 후에, 북제주군이 위 남광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시행한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한달 통과절차로 치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용역수행절차가 불법이고, 그 성과물인 용역보고서도 부실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기사와 사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발사업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온 이상, 1988. 9.부터 5년여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여온 위 온천개발의 성패에 사운을 걸어온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등으로 인하여 투기

자로 물리고 또한 온천개발에 관한 용역의 배후조종자로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가 추진 중인 온천개발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 법익도 침해 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다만 위 기사등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한 개발「투기」나 「배후」 의혹이라는 표현에는 평가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어 그러한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인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관용상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에 의하 지 아니하고 상당한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일정 규모나 횡수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말하고, 「배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뒤에서 무슨 일을 조종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막연 한 점은 있지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지구에 서 온천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온천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 비를 당국에 기부채납하였고, 게다가 신청인이 다른 지역신문에 위 용역의 절차 등에 관하 여 위와 같이 해명광고를 내었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바, 그 렇다면 위 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용역업자인 위 남광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인 신청인 측에서도 위 용역보고서에 관한 사실보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은 위 기사 등에 대하여 반론권의 행사로 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그가 게재한 위 기사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 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 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 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86. 1. 28. 선고 95다카1973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카 2546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인 한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신문결과는 입증자료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온천개발이 되는 경우에 이 지역의 지가상승을 노린 개발투기의 양상을 띠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거나 온천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지주들이 그 소유토지의 10~30%를 신청인에게 준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아직 보도되지는 아니하였다),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이 개발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반박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기사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반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함을 내세운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3. 12. 9.자 제주신문에 위 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인 「북제주군이 용역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취재원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이고, 당국의 해명에 따라 그 다음날로 「북제주군이 과업지시서가 있다고 밝혔다」고 즉각 수정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다음날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부분을 수정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활자 크기나 같은 날짜의 사설내용에 비추어 그 정정보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런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기사등에서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북제주군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문제삼아 그것이 형사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데 대하여 정정보도내용에 「용역성과품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으나,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만이 있고,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기사작성자(또는 사설집필자)의 법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은 전문가나 법해석기관이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당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나 명예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문기재의 시기와 게재위치 및 크기로 정하여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기로 하되,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前註)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後註)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약 200자의 범위 내에서 위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16.

재판장 판사 김 대 회

판사 김 선 우

판사 이 규 진

〈정정보도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

1. 주식회사 제주신문사는 1993. 12. 9.과 같은 해 12. 10. 각 제주신문 1면에서 『의혹... 분출되는 현안』이라는 제목과 『세화송당지구계획』이라는 소제목하에 신청인이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온천개발지역을 지목하여,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을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특정하였고(12. 10.자 제주신문 1면 기사 하단), 위 각 기사 및 같은 해 12. 10.과 12. 11. 각 제주신문 3면의 사설에서 신청인이 개발하여 온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따르면,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이 「특정집단, 특수관계인등의 사의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12. 9.자 1면 기사),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12. 10.자 3면 사설), 「카지노의 대부로 알려진 J씨 등 타지방 사람들이 85.4%나 투기매입한 것으로 나타난」(같은 사설) 등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임을 지적한 후,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이 의뢰하여 (주)남광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투기위한 유령용역』(12. 9.자 1면 기사표제)이라 하면서 「군사독재정권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 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대규모 인허가 이권을 추구한 이들 정치 경제적 강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공개발 계획에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공익을 가장하여 꾸며 낸 것은 바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일부 기술용역업체이었기에」(12. 10.자 3면 사설)라는 등으로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용역업자의 배후에서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조종하여 꾸며 낸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화송당지구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위 용역이 ① 과업지시서도 없이, -「북제주군은 과업지시서조차 용역업자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2. 9.자 1면 기사), ② 중간보고서도 없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같은 기사), ③ 법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참가 기술진이 밝혀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유령 용역보고서를 기본 바탕으로, ④ 용역내용 조차 부실하며 -「범법 부실보고서」(12. 11.자 3면 사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용역보고서가 위법하고 부실한 것으로 단정지은 후, 특히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정집단, 특수관계인등의 사의에 의하여 계획되는」 「통상적이지 않는 <특수한> 이 용역은 누가 어떤 경위로 추진했는가?」(12. 9.자 1면 기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풀리고 있다.」(12. 10.자 1면 기사) 「개발계획의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특정이익 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12. 10.자 3면 사설)는 등으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있어서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관여하여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히 위 용역에 배후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3. 그러나 세화송당지구는 신청인이 1988년 이래 독자적으로 온천을 발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추진하여 온 지역인데, 위 지구의 온천개발은 온천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천굴착허가를 받아 온천발견신고, 온천수질검사,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의 철저한 자원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므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개발이며,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토지투기를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의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는 북제주군이 기술용역업체인 (주)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것으로서 신청인이 (주)남광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 제출에 관여할 자격이 없으며, 위 용역보고서는 용역업체의 독자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은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위 온천의 발견자 및 개발자로서 온천법에 따른 개발에 이해관계가 있

는 당사자였기에, 위 용역의 소요예산만을 복제주군에 기부채납하였을 뿐이고, 위 용역에는 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마치 용역보고서 작성의 배후에 있는 듯이 표현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4. 더우기 위 용역에 관하여는 ① 그 절차상 과업지시서는 복제주군이 용역업체에게 교부한 바 있고, ② 용역계약이나 과업지시서에 중간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바 없으니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용역업체는 중간보고서를 복제주군에 제출한 바 있고, ③ 용역수행자 명부도 제출된 바 있으므로, 용역참가 기술진은 분명히 밝혀졌으며, ④ 특히 용역성과품이 부실하다거나 용역절차상 범법이라는 점은 관계전문가가 판단할 내용으로서, 그것이 확인된 바 없다.

5. 결국 위 온천지구 개발이 투기사업이고, 그 개발의 전제가 되는 위 용역보고서의 제출에 있어서 투기개발을 서두르려는 개발사업자가 그 배후에 있다는 듯이 표현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추진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신문의 의혹, 탈법, 투기, 유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한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당회사가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94카합27호로 받은 정정보도 게재의 판결에 의하여 반론의 제기를 허용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제주신문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바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주온천

□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을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내용도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6. 23.자 결정(94카합33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94년 6월 23일 산부인

과 전문의인 이 씨가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이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내용도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취재보도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침해방지를 위하여 보도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최대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은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그 파열 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청인으로서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한 「신청인과의 면담장소를 밝혀 그 병원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은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신청인 이 씨는 1993년 11월 21일 서울방송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 보고」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임신수술중 몰래 신장을 잘라내어 신장이식 수술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234).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의 목적이 의료사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고, 의사가 신장을 절제했다고 판단할 시청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337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세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방송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60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제2 기재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함과 동시에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게 한다.

이 유 : 1.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방송(SBS) 텔레비전의 1993. 11. 21. 22 : 50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보고』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 및 그 가족과 진료담당의사 사이의 불신풍조를 취재 보도하면서, 그 실례의 하나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신청인이 1979. 7. 30. 원주기독병원 근무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신청외 김 의 자궁외 임신 진료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위 보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환자인 김 와 그 가족이 제기하는 의문, 즉「신청인이 당시 난관의 파열부위를 절제하여 출혈상태를 막아주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왼쪽 신장을 임의로 절제, 적출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그 근거로 (1) 환자에 대한 현혈 및 수혈이 진료일지에 기록된 수술종료시각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 1992년의 복부촬영 사진에 대한 방사선과 전문의의 최초의 의견도「신장이 절제되었다」는 것이었으며, (3) 위 수술 직전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여러차례의 촬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복부촬영필름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있기 수일 전 신청인에게 면담요청을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및 촬영기사를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보내어 김 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과 면담을 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촬영기사는 길이 6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카메라를 면담장소 바닥에 고정하여 두고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고지하거나 그의 승락을 받지 않은 채 면담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 면담 장면 일부를 영동세브란스 병원 건물 및 그 정면의 병원표지와 함께 방영하였다.

(라) 당시 신청인을 면담한 신청외 이 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김 의 주장을 알

려주고 신청인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 신장이 후복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궁외임신에 대한 개복수술시에 이를 절제, 적출하는 것은 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며, (2) 산부인과 전문의가 비뇨기과 담당부위인 신장을 절제할 필요도, 할 수도 없고, (3) 수혈은 수술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김 의 주장은 실제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에 첨가하여, (1) 1994. 4. 경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김 에 대한 신장혈관조형술의 시술결과 그녀의 왼쪽 신장이 인위적으로 절제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형성부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담당의사의 전문적 의견, 그리고 (2) 신청인과 함께 김 에 대한 위 시술에 참여한 바 있는 다른 의사의 「당시 원주기독병원의 의료수준이 (절제된) 신장의 이식을 시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 및 (3) 1992년의 복부촬영사진 판독 의사의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장 절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신장이 없다는 취지이지 신장이 인위적으로 절제되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진술 등을 김 의 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론으로 함께 보도하였다.

(마) 신청인이 1979. 7.경 김 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난관의 과열부위를 절제하여 출혈상태를 막아주는 수술이 아니라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좌측 난관말단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신청인은 위 프로그램에서 김 의 주장을 약 8분간에 걸쳐 집중보도하여 이를 부각시킨 반면, 십수년 전의 수술사실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검토등 아무런 사전 준비나 기억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줌이 없이 약 5분간에 걸쳐 의학상의 일반적 견해만을 개진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면담 장면 및 위 시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건물등을 비밀리에 촬영 보도하였고, 또한 위 사안은 장기절취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의료사고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위 보도 당시 김 의 선천적 신장부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의료사고의 한 사례로 보도하고 신장절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해 놓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장기절제 사실을 의심케 하는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면담 시 비록 김 에 대한 시술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가 개진한 의학상의 전문적 견해와 신장혈관조형술 시술결과의 소개 및 수술참여 의사의 의견 등 피신청인이 취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의 왼쪽 신장은 그 주장과 같이 인위적으로 절제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천적인 형성부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에 이해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 신청인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고, 신장절제 여부에 대한 결론은 피신청인이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보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이 유보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시청자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보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면담 장면의 촬영보도는 비록 이에 대한 사전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취재를 위한 면담의 성격과 위 프로그램의 의도, 면담의 내용, 면담 참여 인원 및 촬영기기의 형태와 위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촬영이 비밀촬영으로서 신청인이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 의 신장절제 여부에 관한 피신청인의 취재 보도내용 및 면담 장소의 촬영 등은 방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진실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보도를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는 언론의 대중적 영향력에 비추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언론의 취재보도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침해방지를 위하여 보도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최대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1) 신청인이 김 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그 파열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시술 당시 신장은 물론 난관 기타 어떠한 장기도 이를 제거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으로서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정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신청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며, (2) 위 수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건물과 그 표지를 화면에 방영한 것은, 비록 신청인과의 면담장소를 밝히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주제로 하는 위 프로그램의 성격상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이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현재 위 병원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이 의사로서 입게 되는 피해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면담장소의 보도라는 방영 의도를 내세워 그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3.

재판장 판사 이 우 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홍 구

정정보도문 1

서울방송은 1993. 11. 21. 22 : 50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보고』 프로그램에서, 1979. 7. 30. 자궁외임신에 대한 개복수술 당시 신장 한쪽이 몰래 절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김순자 씨의 경우를 소개하던 중, 당시 수술집도의사 이 씨가 시행한 수술이 난관 절제수술이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난관절제술이 아니라 좌측 난관 말단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집도의사 이 씨가 근무하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건물 및 병원표지를 화면에 방영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담당의사와의 면담장소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정정보도문 2

본 방송은 1993. 11. 21.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1979. 7. 30.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응급 개복수술시 콩팥 1개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당시 23세)의 경우를 「위험천만한 생명분쟁－의료사고 실태보고」의 한 예로 집중조명하면서 김씨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소개함으로써 마치 주치의가 환자 모르게 콩팥을 잘라내어 이식수술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선천적으로 한개의 콩팥밖에 없는 것으로 혈관조영 촬영결과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김씨에 대한 수술은 좌측 난관 말단 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을 밀어내어 제거한 수술이었고 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본 방송은 진료기록의 분석 등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환자측의 주장에 편중된 보도를 함으로써 잘못이 없는 관련 의사와 병원에 누를 끼쳤으며 응급환자의 장기를 몰래 절제하여 이식하는 예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김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이 씨에게 면담목적은 고지함이 없이 면담하고, 승낙없이 그 면담장면을 녹화·방영하였으며, 수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사진을 방영하였으므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탤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모 양이라고 보도한 것은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어 그 기사는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7.자 결정(94카기350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27일 모델 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가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진모(26)양으로만 표현되었으나, 광고업계 및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탤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 모양’이라고 하면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므로 이 기사는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 진 씨는 1994년 6월 9일 문화일보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술집 등지에서 접대행위를 했다고 보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4서울중재16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민·형사 소송을 취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3509 정정보도

신 청 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달 룡, 강 항 순, 최 창 귀

피신청인 :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

서울 중구 무교동 96

대표이사 이 규 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목요일 발행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화일보 제23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10cm, 세로 3단의 크기로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평 3 견출 고딕체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 신청인 진」이라는 부분은 20급 평1 고딕체로 좌측 하단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11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체로 여백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2cm, 세로 3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80급 활자체로 3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5급 활자체로 하여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의 1994. 6. 9.(목요일) 제23면 좌측 상단부분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큰 제목하에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작은 제목과 『「대기업비서실」 사칭 사기수사 중 드러나』라는 작

은 제목을 붙여서 별지 제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9,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7, 19내지 22, 29 내지 41, 소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박은 자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신청외 이이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이지만 동인이 자신을 접대할 때 그 이름을 진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까닭에 신청외 이의 이름을 진으로 알고, 경찰 및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의 이름을 진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신청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신청인을 접대행위를 한 연예인으로 오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된 사실, 피신청인의 취재기자인 신청외 이은 위 박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을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으로 오해하고 신청인을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후 위 박을 접대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위 이임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결과 드러난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진모(26) 양으로만 표현되었으나 광고업계 및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탈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모 양」이라고 하면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신청인이 중견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문화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문화일보에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4. 9. 16. 문화일보 제23면의 좌측 상단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속보의 형식으로, 큰 제목을 『「윤락」 유명모델 -마담 2명 입건』으로 하고, 작은 제목을 『대기업비서사칭 사기사건 문제의 모델 「진양」 실명은 이양』으로 하여 별지 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하였는데, 위 정정 기사는 이 사건 기사와 그 크기 및 게재부위가 같고 신청인이 위 박에 대한 접대 사건과 무관함을 밝힌 내용의 것이어서 신청인으로서 더 이상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을 제1호증(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4. 9. 16.에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속보 형식으로 별지 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 기사내

용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된 진모 양이 위 연예인 접대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명(實名)이 이양으로 드러났다는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시 위 1994. 9. 16.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과연 신청인이 위 연예인 접대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의 이름은 예명으로서 실제 성(姓)이 진씨가 아닌 이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1994. 9. 16.자 기사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 여전히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써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이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끝으로,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부위 등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은 가로 10cm, 세로 3단의 크기로 하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평3 견출 고딕체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 신청인 진 」이라는 부분은 20급 평1 고딕체로 좌측 하단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11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여백에 세로로 게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7.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이 동 원
 판사 조 윤 신

제1. 정정보도문

1994. 6. 9. 본지 사회면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큰 제목과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작은 제목하에 진희경 양을 지칭하는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의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대기업 사장들을 빙자한 박기진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후 위 기사를 취재한 본사 기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진희경 양은 박기진 씨는 물론 룸살롱 주인이나 갈비집 주인등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기사내용 중 진희경 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신청인 진

제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1994. 6. 9. 본지 사회면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제목과 『거액받고 룸살롱-호텔출입』이라는 소제목하에 진희경을 지칭하는 중견모델 진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의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대기업 사장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 바, 그후 위 기사를 취재한 본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진 양은 박 씨나 룸살롱주인이나 갈비집 주인 등과 만난 적도 없는 등 위 기사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TV광고 및 패션계에서 중견모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 양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

정정보도 신청인 진

제3. 문화일보 1994. 6. 9.자 제23면의 기사내용

탤런트등 유명 연예인 3명이 고급 룸살롱등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접대부 노릇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형사1부 양경석 검사가 9일 대기업 사장등을 빙자해 룸살롱 여주인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힌 박

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수사과정에서 유명탤런트 김모(23), 최모(23), 진모(26)양 등이 박씨에게 속은 룸살롱 여주인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호텔과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5일 J그룹 회장비서를 사칭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R룸

살롱 주인 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J그룹 회장 비서 ○○○인데 일본에서 손님이 와 접대를 해야한다. 예쁜 아가씨에게 8백만원을 주고 R호텔 커피숍으로 나와 돈을 건네 주고 접대를 하게 하면 곧 회장님이 갚아 줄 것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어 다음날 오후 2시 R호텔 커피숍에서 정씨가 보낸 탤런트 김 모양을 만나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탤런트 김양은 정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박씨와 함께 L백화점과 H호텔, 시내여관 등지로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양과 진양 등도 박씨에게 속은 강남구 역삼동 K룸살롱 주인과 C갈비집 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양은 현재 모방송의 아침 드라마에 출연중인 인기 탤런트이며 진모 양은 중견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4. 문화일보 1994. 9. 16.자 제23면의 기사내용

고급 음식점 여주인의 부탁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유명모델과 음식점 여주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16일 모 재벌기업 전속모델인 이모 양(26)이 재벌을 사칭하면서 룸살롱등 고급술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박 씨(38·구속중·본보 6월 9일자 23면 보도)를 만나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양과 이양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C갈비집 주인 김모 씨(여·38)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7일 모재벌 비서실 직원을 사칭한 박씨로부터 「급히 접대할 손님이 있으니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로 예쁜 아가씨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이양에게 현금 1백만원과 신용카드를 주고 접대를 시킨 혐의다. 또 모델 이양은 이에 따라 다음날 오후 서울 S호텔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P호텔과 S호텔, C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모델 이양은 검찰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박씨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박씨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박씨를 접대해온 것으로 보도된 「중견모델 진모 양(26)」의 실명은 이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양이 접대과정에서 자신의 예명을 모델 진○○양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박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담당검사는 연예인의 경우 예명을 사용하는 관례에 따라 공소장에 이양의 이름은 [진○○ 양]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일방적인 주장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0. 31.자 결정(94카합102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31일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측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KBS-2TV가 1994년 3월 27일 『추적 60분-어떤 믿음의 현장 그후 11년』 프로그램에서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운영하는 삼성교회 성주 이 이 사기꾼이며 유부녀를 희롱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소송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94서울중재70), 피신청인측이 사실보도이고 신청인의 주장도 같이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1029 정정보도

신 청 인 :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

광주 북구 중흥1동 696의 3(2층)

대표자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제2텔레비전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5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1994. 3. 27.자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정정보도하라.

이 유 : 이 사건 심문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31.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흥 구

정정보도문 1

한국방송공사는 1994. 3. 27. 21 : 00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 『추적 60분—어떤 믿음의 현장 그 후 11년』 프로그램에서,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운영하는 삼성교회의 성주인 이 이 사기꾼이며 유부녀를 희롱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광주직할시 우산동 제14통장인 최 와의 인터뷰 장면을 보도하였으나, 위 인터뷰 내용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밝히려는 바입니다.

정정보도문 2

본 방송국 2TV가 1994. 3. 27. 21 : 00 추적 60분으로 방송한 내용 중 천부교 승리제단 광

주삼천년성과 교주 이 씨에 대한 방송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1. 이 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공개보도한 것은 초상권침해 보도이므로 사과와 함께 방송을 정정보도합니다.

2. 교회 커튼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두꺼운 커튼을 쳤다고 한 방송도 과장한 보도이므로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합니다.

3. 「주간경향」 잡지에 사과문의 내용은 적게 비치고 중상모략부분만 크게 비치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방송에 대하여도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 이 교주를 중상모략했던 자들의 사과문이 주요 기사였음을 밝혀드립니다.

4. 최 와 본 방송국 김 PD의 인터뷰 내용 방송도 최 가 사기를 당한 일도 없는 데 사기를 당했다는 말과 유부녀를 희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최 의 말만 듣고 한쪽 주장만 전달한 보도였으므로 사과와 아울러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정정보도합니다. □

제보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한 후 기사화했을 지라도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1994. 10. 31.자 판결(94카합2152)

事實概要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31일 최 씨가 경기도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신청인 최 씨의 주장을 인용, 피신청인 경기도민일보사에 정정보도 게재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경기도민일보가 1994년 5월 7일자 11면에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안산경찰서가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사실상의 피

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 이 씨의 주장을 인용보도했다. 「이 씨가 신청인을 찾아가 밀린 건물보수비를 요구하다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도 신청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담당형사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며 무조건 용서를 빌라는 등 경찰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최씨와 담당형사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을 제1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제보에 의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기사화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담당재판부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정정보도문을 제11면에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법원소송전 1994년 5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으나(94경기중재2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제보에 의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하여 불성립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2152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김철준, 김동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 경 한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기도민일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3의 13

대표이사 홍 성 훈

변론종결 : 1994. 10. 1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기도민일보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에 가로 7cm, 세로 4단 크기의 사각 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7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위 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9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기도민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별지 기재 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기도민일보의 1994. 5. 7.자 제11면 기사란 우측 상단부분에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이라는 제목과 『2차례 전화 받았으며 합의 강요』라는 소제목 아래 「안산경찰서가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정확히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6. 안산경찰서와 피해자 이 씨(45·)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 오전 11시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동성기업(주) 대표 최 씨(안산시 반월공단)를 찾아가 밀린 건물보수비 1천1백여만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2차례나 걸려 왔었다고 말해주면서 최씨가 진단이 더 많이 나왔으니 무조건 용서를 빌라는 등 친분관계를 들어 피해의 원인규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날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하직원에게 이모 담당형사를 불러오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씨와 이모 담당형사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평소에도 최씨가 청와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해 경찰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당초부터 정확한 피해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경기도민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경기도민일보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피신청인이 신청외 이 의 제보에 의해 사실확인 을 거친 후 기사화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 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가 허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을 제2호증의 1(경찰관 징계의결이유 통보), 2(경찰관 징계의결서), 3(징계의결서), 4(징계의결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기사내용의 신청인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에 가로 7cm, 세로 4단 크기의 사각 테두리 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7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의 크기로 위 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으로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31.

재판장 판사 한 중 원
판사 강 기 중
판사 안 창 환

〈별지〉 정정보도문

경기도민일보 1994. 5. 17.자 제11면에 보도된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 『「2차례 전화 받았다」며 합의 강요』 제목하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위 기사에서 피해자로 표시된 이 씨는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피해자 최 씨와

의 계약에 따른 건물보수공사 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비 1천1백여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 이 씨」, 「밀린 건물 보수비 1천1백여만원」, 「사소한 말다툼」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 기사는 또 「이씨와 최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하직원에게 이모 형사를 불러 오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씨는 이모 담당형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평소에도 최씨가 청와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씨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씨에게 말한 바 없고 위 담당형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청와대에 압력을 넣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

그 후 신청인은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등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인천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한 결과 94카합2152호 판결에 의하여 반론의 제기를 허용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아내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남편 일방만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기사로 인해 아내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29.자 결정(94카합179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29일 송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외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하고, 의부증 등으로 칼로 위협당하기

도 하는 등 폭행과 행패를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연애 결혼한 최모 씨> ‘결혼 16년째이며, 현재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는’ 등으로 표현하고 최모 씨의 부분적인 모습과 세탁소 화면 및 변조된 음성을 종합하여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취재 당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들은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KBS-2TV가 1994년 6월 2일 8시 뉴스『매 맞는 남편』 제하의 기사에서 「연애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초부터 폭언, 폭행 또는 흉기로 위협당하는 등 행패를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생활비 문제와 성격타으로 부부싸움은 자주하였으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4서울중재165).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취지 대로 반론을 게재할 용의가 있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1797 정정보도

신 청 인 : 송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석 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KBS 제2텔레비전 8시 뉴스비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5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1회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2 텔레비전 8시 뉴스
비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보도하여야 한다.

이 유 : 1.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실도 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KBS 제2 텔레비전의 1994. 6. 2. 8시 뉴스비전 프로그램에서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아래 신청외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하고, 의부증등으로 칼로 위협당하기도 하는 등 폭행과 행패를 건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신청외 최모 씨 및 그의 담당 변호사의 인터뷰형식으로 보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최모 씨라고만 표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화면에서 최모 씨를 식별할 수 없도록 뒤에서 얼굴 아래 부분만을 촬영하고, 그가 경영하는 세탁소의 상호등은 드러내지 않은 채 세탁소 내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만을 촬영한 후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연애 결혼한 최모 씨」 「결혼 16년째이며, 현재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는」등으로 표현하여 신청인 및 최모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위 보도내용과 최모 씨의 부분적인 모습과 세탁소 화면 및 변조된 음성을 종합하여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취재 당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들은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그 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29.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이 승 련

판사 이 홍 구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6월 2일 KBS 2TV 뉴스비전 시간에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하

에, 연애 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으로부터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폭언, 폭행 또는 흥기로 위협당하는 등 행패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위 내용은 최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으로서, 부인은 생활비 문제와 성격 탓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나, 자신이 남편에게 난폭하게 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과일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6월 2일 KBS 2TV 뉴스비전 시간에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하에 연애 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이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난폭하게 굴었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 흥기로 위협하였다는 내용 및 과일칼로 최모 씨 목에 들이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이유없는 폭력과 행패에 시달리다 못해 최씨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 아내 송모 씨는 생활비 문제와 성격 탓으로 잦은 부부싸움은 있었으나, 난폭하게 굴었다는 내용과 주먹을 휘두르고, 과일칼로 남편 최모 씨 목에 들이댔다는 내용, 아내의 이유없는 폭력과 행패에 시달리다 최씨는 결국 아버지 집에 피신해서 이혼소송을 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남편 최모 씨가 이혼소송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보도를 부탁한 것 같으며, 또한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했더라도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으로서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2. 27.자 결정(94카기4890)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4년 12월 27일 최 씨가 동

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이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동아일보 1994년 8월 5일자 22면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지검 형사 4부 김영종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무고혐의로 구속된 최 씨(38)가 조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며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검찰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전모 씨(74)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최씨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오히려 전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구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자신을 파렴치한 도주범죄자로 몰았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검사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정정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2),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4890 정정보도

신 청 인 : 최

서울

현재 구치소 수감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복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동아일보 22면의 기사란 중 7단 중앙부분에 가로 5cm, 세로 1단의 크기로, 오른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

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2면에 7단, 12cm 크기로, 오른쪽에는 7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영호 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일호 활자로, 위 소제목 왼쪽에 세로로 7단에 걸쳐 별지 2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의 1994. 8. 5.자 22면 7단 중앙부분에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라는 제목으로,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30대 여자 피의자가 조사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실이 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 4부 김영종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무고혐의로 구속된 최 씨(36·)가 조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검찰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전모 씨(74)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최씨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오히려 전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구속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기사실에서 검사들로부터 사건개요를 듣고 위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먼저, 신청인에 대하여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신청인이 도주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제1호증(공소장)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94. 3. 29.경 신청외 전 을 강간치상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7. 7.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김 으로부터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로서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 위 검찰청 제528호 검사실에서 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검찰청 정문을 통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이 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위 전 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을제1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위와 같이 위 전

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위 전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신청인은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가로 12cm,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나,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5cm, 세로 1단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결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 론 문

본지는 1994. 8. 5.자 22면 7단 중앙부분에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라는 제목 아래 「최씨는 집 주인 전모 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본지 1994. 8. 5.자 22면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 조사중 도주』라는 제목 아래, 「긴급구속장 발부된 무고죄 피의자 최모() 씨 조사 도중 감시소홀 틈 타

도주했다는...(이하 생략)」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고, 가해자 전모 씨로부터 심한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를 당한 자로서 김 검사의 법정절차 없는 강제납치 연행에 의해 1박 2일간의 불법 체포감금 당하여 조사를 마치고, 혐의점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귀가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편 최씨는 집 주인 전모 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히려 전모 씨가 자신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청구한 사실이 있기에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